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82
----------	-------

발의연월일 : 2022. 8. 4.

발의자 : 설훈 · 기동민 · 김민기

강병원 · 김병기 · 김홍걸

안민석 · 민홍철 · 홍영표

정태호 · 안규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아 매년 점검하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이후 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를 “시행계획의”로, “점검하여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략)</p> <p><u><신 설></u></p> <p>④ 국방부장관은 <u>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u></p>	<p>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⑤ -----시행계획의-----점검·평가하여 다음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u></p> <p><u>⑥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u></p>